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오현숙 의원 대표발의】



2021. 3. 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08호로 2021년 2월 17일 오현숙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원담당공무원의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안 제2조~제3조)

나.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시책마련 등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안 제4조)

다.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원 사항 규정(안 제5조~제6조)

라.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재정 지원 기준을 마련함(안 제7조)

마.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원 방법 등 절차 규정(안 제8조~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 협 의: 관계부서(민원여권과) 협의 완료
- 입법예고 결과(2021. 2. 19. ~ 2. 24.):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무원이 업무 중 민원인의 폭언,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신변에 대한 안전 대책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11개의 조문과 부칙, 별표, 별지 각 1개로 구성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와 적용범위에 대하여 명시하고,
- 안 제5조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마련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피해 지원 및 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예산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 방법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별표] 지원 기준과 [별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에서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음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 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

참 고 자 료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담당자의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